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 (생략)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 (현행과 같음) <u>8.“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u>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u>트러스톤다이나믹 코리아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u>"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혼합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신설> ③(생략) <신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u>트러스톤다이나믹 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u>"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혼합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u>6. 모자형</u> ③(현행과 같음) <u>④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u> <u>1.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u>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u>주식으로 하며, 주식 등에 투자하여</u>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u>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으로 하며, 모투자신탁 등에 투자하여</u>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그 수익을 수익

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신 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u>1. 제3조제4항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투자신탁재산의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역 9. 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생략)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신 설> <신 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5%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이하로 한다. 2. 제17조제2항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4. <u>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u> 5. <u>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u> 6. <u>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u> 7. <u>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 8. <u>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 9. <u>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에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u>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4.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6.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 제>
7.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 제>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	<삭 제>

<u>을 기준으로 한다.</u> 9.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0.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삭 제> <삭 제>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u>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u>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u>증권</u>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u>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u>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u>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u>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삭 제>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삭 제></u>
제25조(판매가격) ① ~ ② (생략) <신설>	제25조(판매가격)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u>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 ⑤ (생략) <신설> ⑥집합투자업자 -----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⑦ (현행과 같음)</u>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 ③ (생략)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두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u>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	제31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u>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한다</u>)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

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생 략)	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익자총회) ① ~ ⑨ (생 략) <신 설> 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 -- 본다.	제38조(수익자총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 ⑪(현행과 같음)
제44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 ③ (생 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44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u>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되는 날을 말한다</u>)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10. (삭 제) ②~ ③(삭 제)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 다</u>)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10. (현행과 같음) ②~ ③(현행과 같음)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⑤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⑥ ~ ⑩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u>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u>부 칙</u> <u>(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u>